

크로아티아 유학비자(체류허가) 신청 및 발급 절차

1. 유학목적 크로아티아 임시체류허가

- 크로아티아에서 일정기간 학업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제3국 국민이 신청·발급 받아야 할 임시체류허가(Temporary Residence Permit/ Privremeni boravak)

※ 크로아티아 유학목적 임시체류허가 관련 정보 출처

-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관
<https://mvep.gov.hr/kr/en>
- 크로아티아 외국인법(관보 제133/2020호)
http://narodne-novine.nn.hr/clanci/sluzbeni/full/2022_-2_215.html
- 크로아티아 제3국 국민 체류에 관한 규정(관보 제20/2022호)
http://narodne-novine.nn.hr/clanci/sluzbeni/full/2020_12_133_2520.html
- 크로아티아 내무부 홈페이지
<https://mup.gov.hr/aliens-281621/stay-and-work/temporary/stay-of-third-country-nationals/2841661>

※ 크로아티아 담당부서 및 연락처

- 크로아티아 내무부 이민·국적·행정사무국(Directorate for Immigration, Citizenship and Administrative Affairs)
- 전 화: +385-(0)1-3788-563
- 이메일: pitanja@mup.hr, sluzba.za.strance@mup.hr

2. 신청자격

가. 중등 교육 임시체류허가(Privremeni boravak u svrhu srednjoškolskog obrazovanja)

- 만 18세 미만으로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하려는 자
- 만 18세 미만의 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교환학생 또는 교육 프로그램 참가자

나. 고등 교육 임시체류허가(Privremeni boravak u svrhu studiranja)

- 정규 대학 교육을 수학하려는 자
- 대학생으로 90일 초과 기간 현장실습(인턴십) 프로그램 참가자

3. 신청절차

○ 신청 기관

- 크로아티아 외 거주시: 거주국 관할 크로아티아 대사관 혹은 영사관
- 크로아티아 내 거주시: 거주지 관할 지방경찰청 혹은 경찰서
- ※ 경찰서 상세정보 링크: <https://policija.gov.hr/policijske-uprave/104>

○ 소요기간: 체류허가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

- 서류 보완 또는 추가 심사가 필요할 경우 60일까지 소요

※ 중요 참고사항

- 크로아티아 입국후 무비자 체류가능 기간인 90일 동안 크로아티아 경찰관서에서 신청하고자 할 경우, 가급적 조속히 신청하여 동 90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(동 90일 이내에 발급받지 못할 경우, 발급이 완료될 때까지는 크로아티아 출국후 재입국에 제한을 받게 됨.)

4. 유효기간

- (체류예정기간에 따라) 최대 1년 이내 기간

5. 신청시 제출서류

가. 공통서류

- 체류허가 신청서
- 컬러사진 1매 (3x3.5cm)
- 여권 원본 및 사본
 -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 예정 기간보다 최소 3개월 이상 남은 여권
(예) 1년 체류 신청 시 잔여 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 남은 여권
 - 공백면이 남아있는 여권
- (14세 이상일 경우) 범죄경력증명서
 - 한국 거주자는 국내 발급 범죄경력증명서
 - 해외 거주자(1년 이상)는 해당 국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

- 의료보험가입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
 - 생계유지능력증빙서류 (등록금 및 체재비 일체)
 - 장학금수혜확인서, 학비면제확인서, 과거 6개월간 급여명세서 및 납세증명서, 연금소득증명서 등
 - 부모 또는 법정보호자의 생계유지능력 증빙서류로 갈음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적보호자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
 - 생계유지능력은 크로아티아 통계청이 매해 2월 발표하는 전년도 크로아티아 순급여(Net Salary)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차등 적용
- * (예) 2025년 신청시 2024년도 크로아티아 평균소득월액인 1,318 유로를 기준으로 계산)

<생계유지능력 증빙요건>

체류자격	내 용
중등교육 고등학교 입학, 고등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년도 크로아티아 평균소득월액의 최소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간 체재비로 보장할 수 있는 재정능력
고등교육 대학(원) 입학, 대학 현장실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년도 크로아티아 평균소득월액의 최소 2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간 체재비로 보장할 수 있는 재정능력 ○ 전년도 크로아티아 평균소득월액의 최소 6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국비용(항공권 구입 등)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재정능력

- * (예) 2025년에 6개월간 대학교 교환학생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신청할 시 생계유지능력 증빙액은 최소 2,767.80 유로 (①+②)
- ① 체제비: 1,977 유로 = 329.50 유로(1,318 유로의 25%) X 6(개월)
 - ② 귀국비: 790.80 유로(1,318 유로의 60%)

나. 고등학교 입학생/교환학생 추가 제출 서류

- 입학증명서 혹은 등록확인서
 - 등록확인서 제출시에는 입학후 한 달 이내에 입학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
- 부모(법적보호자) 명의 자녀(피보호자) 해외유학 동의서
- 체류지 증빙서류
 - 홈스테이 가정 또는 교육기관 소속 기숙사 증빙서류
-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 증빙서류 (교환학생)
 - 교육부 또는 정식 교육기관 주최 프로그램 증빙서류
- 교환학생 프로그램 학교 측 보증서 (교환학생)
 - 등록금 관련 내용 반드시 포함

- 크로아티아 교육부장관의 유학 동의서 (고등학교 입학생)
 - 체류허가 신청 접수처(경찰서)에서 상세 절차 안내

다. 대학(원)생, 대학 현장실습생 추가 제출 서류

- 입학증명서 또는 현장실습확인서

※ 상기 구비서류 중 국내발급 문서는 크로아티아어 번역공증본으로 제출해야하고, 이 중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본 제출 필요

6. 신청/발급 수수료

- 수수료
 - 발급신청 46.45유로, 전자체류허가증신청 31.85유로, 수입인지 9.29유로

7. 체류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재발급 신청

- 체류허가 재발급 신청 시기: 체류허가 만료 최소 60일 이전
- 신청 서류는 아래 서류를 제외하고 최초 신청 시 구비서류와 동일
 - 재발급 신청 시 범죄경력증명서는 불필요
 - 의료보험가입증명서는 최초 신청과 달리 크로아티아 국민건강보험 가입 증빙 서류만 제출 가능
-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만 재발급 신청 가능
- 발급 소요 기간 및 수수료는 최초 신청 시와 동일

8. 크로아티아 출입국·체류 관련 유의사항

-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체류 예정 기간보다 최소 3개월 이상 필요
- 입국후 72시간 이내에 체류지 관할 경찰관서에 거소신고(Residence Registration) 필요
 -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 체류할 시 업주가 신고를 대행하고, 일반 가정집에서 체류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집주인과 함께 경찰서 방문 신고
 - 이사 등으로 거소지(주소지) 변경 시에도 위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 거소 변경신고 필요